

제303회 정례회  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이병도의원 대표발의)

# 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 병 도  
(더불어민주당, 기획경제위원회)

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,  
그리고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2선거구 이병도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‘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지난 2월 본 의원은 전국 지자체 최초로 「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발의하여 선배·동료위원의 지지를 받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.

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설치 근거를 둔 공정경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.

공정경제위원회를 개별 운영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운영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했습니다.

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경제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으로 위원회의 존속기한, 구성,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.

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